

문서번호	기획조정실-7547
보존기간	영구
결재일자	2015.12.23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230호

★과장	팀장	기획조정실장	경영전략본부장	이사장
협 조				

# 직제규정시행내규 중 개정내규(안)

2015.

# 직제규정시행내규중개정내규(안)

(제 안 요 지)

## 1. 제안이유

가. 본부명칭(직제순) 변경 및 은평공동구 신규수탁 정원증원 등과 관련,  
市 정관개정 인가('15.12.21) 사항을 내규에 반영코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기구개편 ... 제3조 “별표1” 기구표

- 현행 ‘경영지원본부’를 ‘경영전략본부’로 명칭변경 및 본부편제 조정  
⇒ 조정된 본부편제에 맞춰 부서별 분장업무 관련조문(제7조~제27조) 순서 정비

나. 정원조정 ... 제3조 “별표2” 정원표

- 공동구관리처 정원 증원 : 증 7명(일반직 3급 이하)
  - ▶ 은평공동구 신규인수, 상암공동구 통합관리, 상계공동구 야간감시 인력보강
  - \* 직급·직렬별 : 3급 1명(시설1), 5급 1명(설비1), 6급 5명(설비5) ← 관련 市방침 준용

다. 부칙 신설 : 시행일(2015.12.22부터)

- 정관, 직제규정 공포·시행일(2015.12.22)에 부합되게 시행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공동구 관리 민간위탁 (재)계약 추진계획(도로시설과-9033호, '15.7.29)
- 시설관리공단 개정정관 승인 통보(보도환경개선과-5035호, '15.12.21)
- 정관 시행·공포(기획조정실-7495호, '15.12.22)

나. 절 차 : 이사장 결재 후 공포·시행

# 직제규정시행내규중개정내규(안)

직제규정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기구 및 정원)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“별표1”과 “별표2”를 조문변동 없이 별지의 “별표1”과 “별표2”로 한다.

제7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27조로 하고,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11조로 한다.

“부칙”을 다음과 같이 “신설”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제3조(기구 및 정원)① (생략) 1. 기구는 별지의 별표1과 같다 2. 정원은 별지의 별표2와 같다.	제3조(기구 및 정원)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	조문변동 없이 “별표1”, “별표2”만 변경(별지 참조)
제7조 ~ 제22조 (생략)	제12조 ~ 제27조 (현행 제7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)	본부 직제순에 부합되게 부서별 분장업무 조문 조정
제23조 ~ 제27조 (생략)	제7조 ~ 제11조 (현행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)	”
부 칙 <신 설>	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	